

안양자이 헤리티온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44-2654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5.12.10.)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발표	정당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5.11.21.(금)	26.01.28.(수)	26.02.02.(월)	26.02.06.(금)	26.02.10.(화)~02.1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2차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청약홈 신청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무순위	○				X		

-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0 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42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등의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2차 접수	당첨자 발표	정당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2.02.(월)	2026.02.06.(금)	2026.02.10.(화)~02.11.(수), 2일간	2026.02.1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안양자이 헤리티온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역, 비청약과열지구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5.12.10.)로부터 1년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17개동, 총 1,716세대 (조합원분 781세대, 보류지 4세대, 임대 292세대, 일반분양 639세대) 중 잔여 116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30	01	049.9890A	49A	42	103동	305, 404, 405, 505, 605, 901, 1105, 1204, 1205, 1401, 1501, 1704, 1804, 1901, 1905, 2001, 2004, 2005, 2101, 2205, 2304, 2404, 2405
					114동	202, 402, 502, 601, 602, 802, 902, 1101, 1201, 1302, 1402, 1501, 1701, 1802, 1902, 2001, 2002, 2202, 2302
	02	049.9890C	49C	10	103동	602, 702, 802, 1002, 1302, 1602, 1702, 2302, 2802, 2902
	03	059.9949A	59A	29	104동	205, 206, 506, 906, 1105, 1106
					105동	305, 406, 506
					106동	306, 606, 1006, 1106, 1205, 1505
					108동	205, 704, 1105, 1304
					112동	204, 305, 804
					113동	605, 606, 905, 1505, 1605, 1606, 1804
	04	059.9905C	59C	9	112동	501, 2301, 2401
					113동	301, 1101, 1501, 1701, 1801, 2401
	05	076.9842B	76B	12	102동	305, 404, 804, 805
					108동	202, 302, 501, 502, 801, 1001, 1201, 1301
	06	084.9902A	84A	2	101동	2501
					115동	1601
	07	084.9914B	84B	12	104동	204, 403, 404, 503, 504
					105동	302, 303
					106동	203, 303, 304, 403, 404
	합계				116	

※ 49B, 59B, 59D타입 잔여 세대는 무순위 1차 청약에서 경쟁률 미달로 인해 금번 무순위 2차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6.03.10.	2026.05.14.	2026.12.15.	2027.08.18.	2028.02.15.	2028.09.14.	2029.02.20.	
49A	103동 1,4,5호 114동 1,2호	2층	1	271,491,000	355,509,000	-	627,000,000	20,000,000	4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3층	1	274,218,900	359,081,100	-	633,300,000	20,000,000	4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189,990,000
		4층	3	276,946,800	362,653,200	-	639,600,000	20,000,000	43,960,000	63,960,000	63,960,000	63,960,000	63,960,000	63,960,000	63,960,000	191,880,000
		5층	2	279,631,400	366,168,600	-	645,800,000	20,000,000	4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193,740,000
		6~10층	6	285,087,200	373,312,800	-	658,400,000	20,000,000	45,840,000	65,840,000	65,840,000	65,840,000	65,840,000	65,840,000	65,840,000	197,520,000
		11~15층	10	290,499,700	380,400,300	-	670,900,000	20,000,000	4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201,270,000
		16~20층	12	295,955,500	387,544,500	-	683,500,000	20,000,000	4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205,050,000
49C	103동 2호	21층 이상	7	301,368,000	394,632,000	-	696,000,000	20,000,000	4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6~10층	4	285,996,500	374,503,500	-	660,500,000	20,000,000	4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198,150,000
		11~15층	1	291,452,300	381,647,700	-	673,100,000	20,000,000	4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67,310,000	201,930,000
		16~20층	2	296,908,100	388,791,900	-	685,700,000	20,000,000	4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68,570,000	205,710,000
59A	104동 5,6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08동 4,5호 112동 4,5호 113동 4,5,6호	21층 이상	3	302,320,600	395,879,400	-	698,200,000	20,000,000	49,820,000	69,820,000	69,820,000	69,820,000	69,820,000	69,820,000	69,820,000	209,460,000
		2층	4	362,637,500	474,862,500	-	837,500,000	20,000,000	63,750,000	83,750,000	83,750,000	83,750,000	83,750,000	83,750,000	83,750,000	251,250,000
		3층	3	366,274,700	479,625,300	-	845,900,000	20,000,000	6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84,590,000	253,770,000
		4층	1	369,911,900	484,388,100	-	854,300,000	20,000,000	6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256,290,000
		5층	2	373,549,100	489,150,900	-	862,700,000	20,000,000	6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258,810,000
		6~10층	8	380,780,200	498,619,800	-	879,400,000	20,000,000	6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263,820,000
		11~15층	8	388,054,600	508,145,400	-	896,200,000	20,000,000	6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268,860,000
59C	112동 1호 113동 1호	16~20층	3	395,285,700	517,614,300	-	912,900,000	20,000,000	7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91,290,000	273,870,000
		3층	1	360,775,600	472,424,400	-	833,200,000	20,000,000	63,320,000	83,320,000	83,320,000	83,320,000	83,320,000	83,320,000	83,320,000	249,960,000
		5층	1	367,920,100	481,779,900	-	849,700,000	20,000,000	6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84,970,000	254,910,000
		11~15층	2	382,209,100	500,490,900	-	882,700,000	20,000,000	6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88,270,000	264,810,000
		16~20층	2	389,353,600	509,846,400	-	899,200,000	20,000,000	6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269,760,000
76B	102동 4,5호 108동 1,2호	21층 이상	3	396,498,100	519,201,900	-	915,700,000	20,000,000	71,570,000	91,570,000	91,570,000	91,570,000	91,570,000	91,570,000	91,570,000	274,710,000
		2층	1	441,746,600	578,453,400	-	1,020,200,000	20,000,000	82,020,000	102,020,000	102,020,000	102,020,000	102,020,000	102,020,000	102,020,000	306,060,000
		3층	2	446,163,200	584,236,800	-	1,030,400,000	20,000,000	83,040,000	103,040,000	103,040,000	103,040,000	103,040,000	103,040,000	103,040,000	309,120,000
		4층	1	450,579,800	590,020,200	-	1,040,600,000	20,000,000	8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104,060,000	312,180,000
		5층	2	454,996,400	595,803,600	-	1,050,800,000	20,000,000	8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315,240,000
		6~10층	4	463,829,600	607,370,400	-	1,071,200,000	20,000,000	87,120,000	107,120,000	107,120,000	107,120,000	107,120,000	107,120,000	107,120,000	321,360,000
84A	101동 1호 115동 1호	11~15층	2	472,662,800	618,937,200	-	1,091,600,000	20,000,000	89,160,000	109,160,000	109,160,000	109,160,000	109,160,000	109,160,000	109,160,000	327,480,000
		16~20층	1	549,693,500	719,806,500	-	1,269,500,000	20,000,000	106,950,000	126,950,000	126,950,000	126,950,000	126,950,000	126,950,000	126,950,000	380,850,000
		21층 이상	1	559,782,400	733,017,600	-	1,292,800,000	20,000,000	109,280,000	129,280,000	129,280,000	129,280,000	129,280,000	129,280,000	129,280,000	387,840,000

약식 표기	동별 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계약시	2026.03.10.	2026.05.14.	2026.12.15.	2027.08.18.	2028.02.15.	2028.09.14.	2029.02.20.	지정기간
84B	104동 3,4호 105동 2,3호 106동 3,4호	2층	2	493,923,100	646,776,900	-	1,140,700,000	20,000,000	94,070,000	114,070,000	114,070,000	114,070,000	114,070,000	114,070,000	114,070,000	342,210,000
		3층	4	498,859,300	653,240,700	-	1,152,100,000	20,000,000	9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345,630,000
		4층	4	503,838,800	659,761,200	-	1,163,600,000	20,000,000	9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349,080,000
		5층	2	508,775,000	666,225,000	-	1,175,000,000	20,000,000	9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352,500,000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기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잔금 납부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자는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취소이 취소되며, 계약 이후에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본 표기재산의 주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6-00604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56-00604, 예금주 :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기재,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계약시	2026.05.14.	입주지정일
49A	5,900,000	590,000	1,180,000	4,130,000
49C	5,800,000	580,000	1,160,000	4,060,000
59A	19,200,000	1,920,000	3,840,000	13,440,000
59C	19,700,000	1,970,000	3,940,000	13,790,000
76B	18,000,000	1,800,000	3,600,000	12,600,000
84A	21,100,000	2,110,000	4,220,000	14,770,000
84B	19,100,000	1,910,000	3,820,000	13,370,00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5-99104	GS건설(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2차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2차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06.(금) ~ 2026.02.15.(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0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서류 제출 대상자 : 정당 당첨자 전원
- 서류 제출 일시 : **2026.02.10.(화)~02.11.(수) 10:00~17:00**
-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안양자이 헤리티온'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 군인이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안양자이 헤리티온'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2.10.(화)~02.11.(수)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안양자이 헤리티온'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안양자이 헤리티온'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02.12.(목)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134171-0003838	110111-000269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75, 3층 301호(안양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xi.co.kr/AYX>)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
- 분양문의 : 1644-2654